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실
개인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침**

2026. 04



성신여자대학교
SEUNGSHIN WOMEN'S UNIVERSITY

■ 개인정보보호구 비치 및 착용

□ 대상

- 비치자: 연구실책임자(교수)
- 착용자: 연구활동종사자(교수, 학생, 대학원생 등)
 - 연구실책임자(교수)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구 종류 및 착용기준

- [필수] 모든 연구실 출입 시 착용 보호구(저위험 연구실 제외)
 - 실험복
 - 안전화(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 ※ 슬리퍼, 샌들, 하이힐 불가
- [필수] 연구활동에 따른 비치 및 착용 보호구

구분	연구활동 [붙임]	보호구	
화학 및 가스 (총 7종)	C1	보안경 또는 고글,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앞치마, 호흡보호구
	C2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염복
	C3		호흡보호구
생물 (총 6종)	B1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B2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잘림 방지 장갑, 방진모, 신발덮개
	B3		-
	B4		호흡보호구
물리 (기계, 방사선, 레이저 등) (총 15종)	P1	보안경 또는 고글, 내열장갑	
	P2	보안경 또는 고글, 방한장갑	
	P3	보호장갑, 안전모, 안전화	
	P4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안전모, 보안면	
	P5	귀마개 또는 귀덮개	
	P6	보안경 또는 고글, 잘림 방지 장갑	
	P7	방사선 보호복,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P8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방염복	
	P9	절연보호복, 보호장갑, 절연화	
	P10	고글,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P11	방진장갑	

□ [붙임] 연구활동 구분

- 화학 및 가스
 - [C1]다량의 유기용제, 부식성 액체 및 맹독성 물질 취급
 - [C2]인화성 유기화합물 및 화재·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 취급
 - [C3]독성가스 및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생물
 - [B1]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는 혈액, 세포, 조직 등 취급
 - [B2]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으며 물릴 우려가 있는 동물 취급
 - [B3]「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에 따라 작성·시행하는 실험지침에 따른 위험군 분류 중 제1위험군 취급
 - [B4]「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에 따라 작성·시행하는 실험지침에 따른 위험군 분류 중 제2위험군 취급
- 물리(기계, 방사선, 장비, 화기 취급)
 - [P1]고온의 액체, 장비, 화기 취급
 - [P2]액체질소 등 초저온 액체 취급
 - [P3]낙하 또는 전도 가능성 있는 중량물 취급
 - [P4]압력 또는 진공 장치 취급
 - [P5]큰 소음(85dB 이상)발생하는 기계 또는 초음파기기를 취급 또는 큰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
 - [P6]날카로운 물건 또는 장비 취급
 - [P7]방사성 물질 취급
 - [P8]레이저 및 자외선(UV) 취급
 - [P9]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취급
 - [P10]분진·미스트·흙 등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나노 물질 취급
 - [P11]진동이 발생하는 장비 취급

□ [붙임] 보호구의 종류

안면 및 안구 보호	보안경	고글	보안면
			
호흡기 보호	방면형 방독마스크	일회용 방진마스크	일회용 위생마스크
			
손 및 신체 보호	실험복	니트릴 장갑	내화학성 장갑
			
	초저온용 앞치마	초저온용 신발커버	초저온용 장갑
			
일반 안전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
			
전기 안전	아크 방호복	절연 장갑	절연 장화
			